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고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주민복지과장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무통계담당 심사필

고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1 -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2021. . . .

제 출 자 : 고 령 군 수

1. 개정이유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‘법률에 의무적으로 절차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’고 규정되어 있고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(자활기금의 적립)에 자활기금의 존치가 규정되어 있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를 삭제하고자 함.

동 조례 제13조제2항 관계규정의 준용 대상인 타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삭제(안 제4조의2)

나. 관계규정의 준용 변경(안 제13조제2항)

- 「고령군 재무회계 규칙」을 「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변경

3. 조례 개정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기타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- 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- 다.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: 2021.10.15.~2021.11.06. 기간 중 의견없음
- 라. 성별영향평가 결과 : 없음
- 마. 규제영향분석 결과 : 없음
- 바. 기타 관련사항 : 없음
- 사. 조례규칙심의회 : 원안 통과(2021.11.11.)

고령군 조례 제 호

고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삭제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」 제31조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」 제31조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「고령군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. 12. 31 일로 하되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</p> <p>2. 법 제18조 및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」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제13조(관계규정의 준용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고령군 재무회계규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삭 제></p> <p>제5조(지원대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----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」 제31조-----</p> <p>-----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관계규정의 준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「고령군 예산 및 기금</p>

칙」을 준용한다.

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-
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령군 주민복지과	
연 락 처	(054) 950 - 6177

관 련 법 령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한다.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18조의3(자활기금의 적립)

-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.
-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·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

제26조의2(자활기금의 적립)

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.